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3. 공포, 2020.12.4.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 및 처리실적, 수거·처리 선박·장비·시설 등의 현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매립·고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고립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제6조)

매립 또는 고립 가능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폐패각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하고,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고립처분 계획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해양지중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규정(안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요건을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와 동일하게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 및 “폐기물 등의 물질이 처분 목적으로 추가될 수 없음”으로 규정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 위치 및 수행 업무

규정(안 제1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해양환경공단에 두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국제협력,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마. 현행 법률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4조·제10조·제11조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

정화 등 처리 실적

2.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해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 장비 및 시설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해양폐기물의 실태 조사 및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마. 지역주민 참여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출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매립·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저준설토사

2. 폐패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6조(고립처분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처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고립처분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처분 해역의 개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투입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처분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저감대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고립처분 허가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원료물질과 포집·격리 공정 이용에서 기인한 관련 부수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여야 함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그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될 수 없음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격리 계획서
 -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개황
 -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격리 방법
 -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해양지중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투입 기술인력
 -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계획 및 상시 모니터링 계획
 - 바. 해양지중저장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모니터링 및 영향 저감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퇴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해양환경기준 중 해저퇴적물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2. 그 밖의 제1호에 준하는 물질 중에서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10조(준설물질의 활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항만·어항 부지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퇴적물의 피복
2. 어장 정화사업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 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에

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의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 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4.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서 정한 해양폐기물등(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검사·보고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및 확인·점검·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가. 수탁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나. 지정해역 배출 준수 여부

다.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합 여부

라. 불법폐기물의 혼입 여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가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나. 폐기물 수거 방법의 적정성

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여부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이행 등
정화 방법 등의 적정성

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여부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경우

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조사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다. 폐기물의 농도 분석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

5.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경우

가. 신고된 폐기물의 종류, 발생공정의 적합 여부

나.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위탁하는 폐기물량의 적정성

마. 신고된 폐기물에서의 이물질 혼입 여부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 해역·수역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5.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정화의 명령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1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품질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설품질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

1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수리
 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수리
 18.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폐기물수거업자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2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2.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폐기물수거업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한 자료제출·보고 및 출입검사
 24.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7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거·정화 등의 관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로서 제조·가공 과정에서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동·식물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동·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

2.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으로서 각질류의 것
나. 준설토로서 합성로프, 페어구, 플라스틱류, 님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해저지질구조 내에 격리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법 제1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비고

1. 액상은 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폐기물 배출해역(제4조제2항 관련)

해역	배출해역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갑해역 전역
2. 병해역: 모든 국가의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3. 정해역: 병해역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	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나.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비고 : 무해역은 다음 각 목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준설품질의 활용을 위한 오염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mg/kg, 건중량 기준)

항목	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18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6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25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8
납 또는 그 화합물	45
니켈 또는 그 화합물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64
총질소	1,500
총인	500

비고 :

오염도 기준에서의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이고,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이다.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제1항 관련)

업종	첨부서류
폐기물해양배출업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6. 폐기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능력 기준(제12조 관련)

구분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해양배출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해양폐기물수거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각 1명 이상 보유

비고

1. 기술능력 기준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해양폐기물관리업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양관련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 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해양관련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250만원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25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50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경우 또는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5호	150만원
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	250만원
사.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1호	50만원
아.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2호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306